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642호

나. 발 의 자 : 김경 의원(찬성자 23명)

다. 발의일자 : 2021년 8월 11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2. 제안이유

- 최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진 지방정부청사 내부에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공간이 부족해 근무시간 내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슈된 바 있음.
- 오래전부터 정부청사나 대학과 같은 공공건물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 왔으나,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현행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법적

으로 명시함으로써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 여건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8조제8호 신설).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사업주의 협조사항에 사업장 내에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명시하여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휴게여건을 개선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사업장 내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청소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¹⁾.
- 정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²⁾에 따르면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64.6%에 달하고, 휴게실이 있더라도 설치 비품이

1) 홍대입구역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휴게공간에 대한 보도(2017),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고(2019, 2021), 신도림역 청소노동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2020) 등의 사례가 보도됨.

2)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2017)

미비하거나 소음 발생, 면적 불충분, 환기곤란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등 열악한 노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는 2014년부터 산하기관에 대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³⁾, 정부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2018.7.)에 따라 사업주에게 휴게공간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휴게시설 기준을 정하지 않고 추상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설치기준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는 관계로 적용이 어려웠음.
- 이에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2021.8.17. 공포)하여 모든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음.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2021년 6월까지 설치대상 669개소 중 634개소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연말까지 모두 완료 예정임.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개정안은 서울시와 그 산하기관, 그 밖에 사업주의 협조사항으로 사업장 내에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명시한 것으로, 사회적 요구와 법률 개정의 부합하는 시의성 있는 입법조치로 볼 수 있음.
- 다만,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2022.8.18.)되면 휴게시설의 설치를 사업주의 협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보다 강화된 조치가 가능해지므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효과는 한시적일 것으로 판단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8